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0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지원 • 박홍배

추미애 • 송옥주 • 이재정

복기왕・김 현・김병기

허성무 • 이광희 • 김남근

김 윤 • 권향엽 • 최민희

강유정 • 송재봉 • 김주영

이병진 · 김성환 · 황명선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산·유통·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,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 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.

이에, 종이, 유리, 금속,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 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,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 드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·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
- ② 종이, 유리, 금속,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원료생산자"라 한다)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순환원료 의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원료생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<u>환</u>	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①
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	
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	
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	
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	
진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・교
	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
	경제성 평가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종이, 유리, 금속, 플라스틱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
	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
	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(이
	하 이 조에서 "원료생산자"라
	한다)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	기준에 따라 순환원료의 사용
	을 확대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환경부장관은 원료생산자가
	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
	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

<u>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</u> <u>에 따라 할 수 있다.</u>